

휴대폰·PC 압수수색 영장·클라우드 압수수색 '위법'

불법촬영 수사하려 휴대폰·PC 영장 받아

휴대전화서 '클라우드' 접속해 증거 확보

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 받은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20년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휴식시간에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발견해 이를 확보했다. A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주장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A씨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PC 하드디스크와 외부

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A씨의 주거지를 수색 장소로 각각 기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A씨 휴대전화를 확보, 로그인돼 있는 구글계정을 통해 A씨 클라우드에 접속해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이 밖에 A씨는 재력자 또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41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으므로 해당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로선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새로운 영장으로 압수해야 했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다른 불법촬영,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 혐의별로 징역 4개월, 10개월,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1심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클라우드에서 압수수색한 불법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클라우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는 PC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일종의 외부 서버다. 개인의 PC나 휴대전화와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용량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개인 PC나 휴대전화와 아닌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즉, 수사기관이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서 '외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해야 하며, PC나 휴대전화만 기재돼 있다면 클라우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면서 "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PC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이슬기자



'총파업 6일째' 행진하는 동부고속지부 노동자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 고속노동조합 동부고속지부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후 행진하고 있다. 동부고속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작된 파업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속옷에 금괴"...공항 환승구역서 밀반송 50대 여성, 집유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속옷에 숨긴 뒤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

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구역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0여만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3덩이(0.6kg)를 전달받아 속옷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2018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9200여만원 상당의 금괴 합계 3.8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尹 테러' 게시물 올린 네티즌 불구속 송치

취임 전날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 글 올려

인터넷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게시물 올린 혐의를 받는 네티즌들이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씨를 각각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일제 강점기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며 "오늘날 다시 그 전일과 후손들이 취임식을 하는 암울한 시대에, 실낱같은 희망을 불

어넣어 줄 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충청북도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지난 6월2일 네이버 '건사람' 카페에 '2022년 6월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B씨는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인 남성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한기자

'알몸 배회' 50대남, 경찰에 흥기질까지

알몸으로 동네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흥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경찰관을 때리고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50대 초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주택가에서 관할 지구대 소속 B경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과 발로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씨는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하는 틈을 타 인근 자택에서 쫓겨나온 흥기로 위협적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흥기를 든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